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175호

「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」(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-331호, 2018.6.7)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20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」 일부개정안

1. 개정이유

-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신속한 긴급상황 복구를 위해 긴급신고 절차를 신설하고,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, 열차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상황 뿐 아니라 시설물(전신주 등) 전도, 지반침하 등 열차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도 즉시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열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

2. 주요 내용

- 가. 철도보호지구에서의 건설장비 또는 시설물(전신주 등) 전도, 지반침

하 등 긴급상황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긴급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긴급상황의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(제5조제2항)

나.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 철도시설 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,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검토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.(제6조제1항)

다. 신고인은 건설장비 또는 시설물(전신주 등) 전도, 지반침하 등 열차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역, 철도보호지구관리자, 철도운영자 및 관제업무종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, 필요시 가까운 역에 열차운행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.(제11조제1항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철도시설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→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
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시설안전과
- 전화 : 044-201-4889 / 팩스 : 044-201-5673